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4
----------	----

제출년월일 : 1996. 1.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행정 조직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 행정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운용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명칭변경  
보사환경국 → 보건환경국  
가정복지국 → 사회복지국  
지역경제국 → 재정경제국  
민방위국 → 민방위재난관리국
- 10실. 국. 본부의 분장사무 규정

##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1조제1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7조

- 덧붙임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부.  
2. 기타참고자료 1부.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두는 부지사 및 실.국.본부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지사) ① 도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지도.감독

③ 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지사를 대리한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한 각종 정무적 협의에 관한 업무
3.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
4.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5. 국회 등과 관련되는 대외 업무의 협조
6.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
7.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실.국.본부의 설치) 충청북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사회복지국, 농정국, 건설교통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를 둔다.

제4조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 분석평가
2.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
3. 예산의 편성 및 투자사업 심사
4. 조례와 규칙의 심사
5. 소송사건 관련 업무와 법규의 편찬
6. 행정 전산화 관련 업무
7. 통계의 처리와 공표
8. 도정 전반에 걸친 정책연구의 개발

제5조 (감사실) 감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감사계획 수립
2. 공무원 및 산하단체 임직원 비위조사 처리
3.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제6조 (내무국) 내무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각종 의전행사의 조정, 집행 총괄
2. 인사와 포상, 각종 시험 업무
3. 지방행정시책 및 시, 군의 지도, 조정에 관한 사항
4.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6. 새마을 관련 각종사업의 지원 및 사회 진흥
7. 예산의 지출 및 결산
8. 민원실의 설치 운영
9. 문화예술육성, 문화재 보존관리 및 체육진흥
10. 다른 실, 국, 본부의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재정경제국) 재정경제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세제도의 운영 및 세외수입의 과징
2. 지역경제계획수립 추진 및 동향의 분석. 관리
3. 공기업 경영의 종합기획 조정
4. 공유재산관리
5. 관광의 진흥

제8조 (보건환경국) 보건환경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보건행정에 관한 기획 조정
2. 의무. 약무.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3.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4. 공중 및 식품위생의 관리 및 지도 감독
5. 환경의 보전과 지도 감독
6. 상. 하수도의 관리

제9조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사회복지행정의 기획 조정
2.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운영
3. 생활보호 및 구호사업
4. 가정복지 증진
5. 여성복지의 향상
6.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 감독

제10조 (농정국) 농정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의 수립 및 농정시책 총괄
2. 농업생산과 양정 업무
3. 농지의 관리와 농지의 개량
4. 농업용수의 개발과 수리시설의 관리
5.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6. 축산과 수산에 관한 사항
7.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

제11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과 개발
2. 건설기계의 관리, 등록, 검사
3. 도시계획 관련 업무
4. 지적관리의 기획, 조정 및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
5. 주택행정 종합계획, 건설업 면허에 관한 사항
6. 하천관리 및 방재대책과 집행
7. 도로와 교량의 유지 관리
8.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

제12조(민방위재난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민방위계획 수립
2. 민방위 교육훈련 및 경보통제소 운영
3. 동원에 관한 사항의 조정 통제
4. 비상대책에 관한 업무
5. 재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

제13조(소방본부) 소방본부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행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2. 소방장비의 유지 관리
3. 소방훈련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4. 구조대책 및 구급 업무

제14조(담당관, 과 등의 설치) 담당관, 과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